

의안번호	제 217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7일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3. 7.
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물의 원활한 개축사업 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
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나. 관계법령: 별첨
- 다. 입법예고(2023. 1. 27. ~ 2023. 2. 16.): 의견 없음
- 라. 규제심사: 해당 없음
- 마.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바.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사. 사전심사: 적정함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북도 내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하며, 부속건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조립식건물 등)”을 “공립유치원, 공·사립 초·중·고·특수학교, 직속기관,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, 부속건축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”를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별표8”을 “별표 8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관리조례”를 “관리 조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교육시설물”이란 <u>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북도 내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하며, 부속 건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조리식건물 등)은 제외한다.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<u>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1. <u>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인 교육시설물</u></p> <p>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<u>별표8에 따른 C등급(보통)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·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(리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공립유치원, 공립·사립 초·중·고·특수학교, 직속기관,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, 부속건축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)-----.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<u>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</u> ---</p> <p>2. ----- ----- <u>별표 8</u>----- ----- -----</p>

모델링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
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
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

3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
있다.

1.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
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
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
경우

2. ~ 5. (생략)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-----
----- 관리 조례 -----

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
진하는 경우

관계법령

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시설물안전법)

[시행 2021. 9. 17.] [법률 제17946호, 2021. 3. 16., 일부개정]

제16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)

-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1.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2.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·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